

제291회 오산시의회(임시회) 집회공고

성길용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의회(임시회)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 292회 오산시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.

1. 집회일시 : 2025년 3월 10일(월요일) 10:00
2. 집회장소 : 오산시의회 본회의장

2025년 3월 4일

오산시의회 의장 이 상

